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2,600,000	6,078,000
일반회계	187,480,000	5,624,400
특별회계	15,120,000	453,600
기타특별회계	15,120,000	453,6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00,000	18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805,000	114,150
의료급여특별회계	550,000	16,5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100,000	33,000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1,410,000	42,300
치수사업특별회계	2,240,000	67,2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0	45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46,00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